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09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최하나(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13.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31704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2015. 7. 28.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액 86,947,000원)을 24,659,8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1,792원, 원고 B에게 13,338,0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와 E에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을 내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매일 일정액씩 배당금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에게, 원고 B는 합계 41,800,000원을, E은 합계 19,090,000원을 투자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7. 11. 4. E으로부터 위 투자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 유사수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5553). 위 법원은 2019. 12. 18. 위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손해는 11,457,000원, E이 입은 손해는 9,725,400원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9,725,400원, 원고 B에게 11,457,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사건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다. 피고는 2015. 9. 18. D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7. 19. 협의이혼 하였는데, D는 2015. 7. 28.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86,947,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D는 원고들에게 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 반환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86,947,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D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서 2015. 7. 28.부터 2017. 2. 10.까지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액 86,947,000원)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인 24,659,806원(= 11,321,792원 + 13,338,0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1,792원, 원고 B에게 13,338,0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사업상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2013. 10.경 2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2013. 11.경 및 2014. 2.경에 돈을 빌려주었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도 D에게 빌려주었다. D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증여가 아니라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거나 결혼 후 생활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D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5. 7. 28.부터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2017. 2. 10.까지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86,947,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가 위 각 송금 당시 부부였던 점, 그 세부적인 송금내역을 보면 D가
피고에게 송금한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 횟수 또한 다수이며 각 송금액수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각 이체 시점의 전체 거래액수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이다), 갑 제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송금 이전에 D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D로부터 종전 대여금의 변제
또는 생활비로 위 돈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이는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송금한 돈이 D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라는 의견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D의 위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주철현, 판사 정경수